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1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청운신용협동조합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상 '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(구속성 공제상품 계약 체결)'으로 과태료 35백만원, 과징금 5억30백만원 부과

○ **(수정의결)**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35백만원, 과징금 42백만원을 부과

제재대상	금전제재	
	원안	수정안
청운신용협동조합	과태료 35백만원 과징금 5억30백만원	과태료 35백만원 과징금 42백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구속성 공제상품 계약 체결

◦ **(금감원 원안)**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·후 각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- (대구)청운신용협동조합은 20xx.x.xx. 중소기업인 ㈜○○○○에 대해 XX억원의 대출 실행시 동사 공동대표인 ◎◎◎에게 신협중앙회 공제상품 가입을 요구하였고, 그 결과 ◎◎◎은 20xx.x.x. 신협중앙회 공제상품에 가입*(총 납입공제료 XXXXX원)하였음

* 가입자의 공제상품 해지 요청에 따라 2023.7.10. 해약환급금(XXXX원) 지급

○ **(수정의결 사유)** 청운신협은 금소법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, 동 행위가 규정개정 전에 이루어진 점,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, 개정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액을 사전통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심에서 심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합산한 금전제재와 일치하는 수준인 과태료 35백만원, 과징금 42백만원으로 수정 심의(과징금 5억30백만원 → 42백만원, 과태료 불변)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○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
○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제14조